

<2016년 결산보고서>

2017. 03.

드림스드림 대표 임 채 종



I. 2016년도 사업내역

1) 학교 짓기 상황 및 기타

- 2013~2016년 학교 짓기 사업 경과보고

No.	국가/지역	목표금액	후원금모금일	건축완공/현황	학교운영
1호	네팔 룸비니	2700만원	2013.10.22~2014.03.27	2014.05.30 완공	운영중
2호	파키스탄 라호르 세꾸뿌라	1500만원	2014.03.27~2014.12.17	2016.08.22 완공	운영중
3호	아프리카 차드 갠덴	2000만원	2014.12.17~2015.10.12	2016.09.30 완공	운영중
4호	파키스탄 파이슬라바드로 깨	2000만원	2015.10.12~2015.12.21	2016.08.31 완공	운영중
5호	아프리카 에티오피아 아카 코	2000만원	2015.12.21~2016.09.08	2017.03월 예정	
6호	파키스탄 파이슬라바드 타 리안 왈라	2000만원	2016.09.25	2016.12월 예정	
7호	방글라데시 쿨나 크리스 노골	2000만원	2016.09.26	부지 섭외 중	
8호	아프리카 라이베리아 Duport	2000만원	2016.09.09~2016.11.22	2017.04월 예정	
9호	아프리카 탄자니아 마구구	2000만원	2016.10.18	2017.03월 예정	
10호	파키스탄 파이슬라바드	2000만원	2016.12.26		송금함 (12.28)

II. 2016년도 결산서

2016.01월 01일~12월 31일까지 결산기준, (단위 : 원)

수 입			지 출		
과 목		금 액	과 목		금 액
① 회 비			① 인건비		
② 후원금		123,689,496	② 운 영 경 비		
③ 보조금	①		③ 사업비	4 호 파키스탄(문철웅) 잔금	5,000,500
	②			5호에티오피아학교(김희중)	20,000,500
④ 수익사업				6호 파키스탄(문철웅)	20,000,500
⑤ 기타수입	은행 이자수입	13,234		9호탄자니아(홍향임)	20,001,000
⑥ 전년도 이월액		5,411,079		11호 차드(박근선)	7,001,000
⑦ 차입금				10호 파키스탄(문철웅)	20,000,500
				SMS 수수료, 인증서비용	15,200
			④ 차년도 이월액		37,094,609
합 계		129,113,809	합 계		129,113,809

결산에 대한 감사는 주진용 감사, 한건수 감사에게 받음.

드림스드림 Dreams Dream 정관

제1장 총 칙

제1조(명칭) 이 단체는 “드림스드림 Dreams Dream”(이하 “단체”라 한다)이라 한다.

제2조(목적) 이 단체는 학교가 없는 저개발국가 또는 개발도상국가나 지역에 학교를 지어서 아이들이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사무소의 소재지) 단체의 주사무소는 성남시에 둔다.

제4조(사업) 단체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저개발국가 또는 개발도상국가나 지역에 학교건립 및 관리
2. 완공 후 학교운영자문, 콘텐츠 제공, 교사파견
3. 해외 학교짓기와 관련된 기타 업무.

제2장 회 원

제5조(회원의 자격) 단체의 회원이 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단체의 회원은 제2조의 목적과 설립취지에 찬동하여 소정의 가입절차를 마친 자로 한다.
2. 단체의 회원이 되고자 하는 자의 온라인 가입신청서나 오프라인 가입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한다. (가입신청서 필수 사항: 성명,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제6조(회원의 권리)

1. 회원은 단체 임원 선거권 및 피선거권을 가지며 총회에 참석하여 단체의 활동에 관한 의견을 제안하고 의결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2. 회원은 단체의 자료 및 출판물을 제공받으며, 단체운영에 관한 자료를 열람할 수 있다.

제7조(회원의 의무) 회원은 다음의 의무를 진다.

1. 단체의 정관 및 재규정의 준수
2. 총회 및 이사회에 결의사항 준수

제8조(회원의 탈퇴와 제명)

1. 회원은 본인의 의사에 따라 단체에 연락 후 온라인, 오프라인으로 탈퇴서를 제출 후 자유롭게 탈퇴할 수 있다.
2. 회원이 단체의 명예를 손상시키거나 목적 수행에 지장을 초래한 경우 또는 1년 이상 회원의 의무를 준수하지 않은 경우에는 이사회의결을 거쳐 제명할 수 있다.
3. 탈퇴 및 제명으로 인하여 회원의 자격을 상실한 경우에는 납부한 후원금 등에 대한 권리를 요구할 수 없다.

제3장 임 원

제9조(임원의 종류 및 정수) 단체는 다음의 임원을 둘 수 있다.

1. 운영이사 (이사회 의결권이 있는 이사이며 대표, 고문, 사무총장을 포함하여 7인 이상으로 한다.)
2. 감사 (2인으로 하며 감사는 이사회에는 참석은 가능하나 이사회 의결권은 없다.)
3. 역할이사 [이사회 참석은 가능하나 이사회 의결권이 없으며 단체에 필요한 역할을 수행 하며 10인 이상으로 한다. (기획이사, 사업이사, 실행이사, 미디어이사, 건축이사, 홍보이사, 콘텐츠이사, 해외발굴이사, 문화이사, 정보이사)]

제10조(임원의 선임)

1. 이사회의 의결권이 있는 운영이사는 총회에서 선출한다.
2. 운영이사는 역할이사과 감사 중에서 선임한다.
3. 역할이사는 운영이사 3인 이상의 동의를 받아 대표가 임명한다.

4. 임기가 만료된 운영이사, 감사는 임기만료 3월 이내에 후임자를 선출하여야 하며, 임원이 궐위된 경우에는 궐위된 날로부터 4월 이내에 후임자를 선출하여야 한다.
5. 역할이사를 그만하고자 할 경우 역할이사 내려놓은 소정의 양식을 제출한다.

제11조(임원의 사임 및 해임 등) 의결권이 있는 임원이 자의로 사임하는 경우에는 서면에 의해 사임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사임서가 단체장에게 제출되어 수리된 때에 사임의 효력이 발생한다. 또한, 임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해임할 수 있다.

1. 단체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
2. 임원간의 분쟁·회계부정 또는 현저한 부당행위
3. 단체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제12조(임원의 결격사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임원이 될 수 없다.

1.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2. 파산자로서 복권이 되지 아니한 자
3.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것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4. 금고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제13조(임원의 임기)

1. 운영이사, 감사의 임기는 3년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선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2. 역할이사 임기는 최소 3년 이상으로 하며, 3년 후에 특별한 사유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연장 된다.
3. 임원은 임기만료후라도 후임자가 취임할 때까지는 임원으로 직무를 수행한다.

제14조(임원의 직무)

1. 대표는 단체를 대표하고 단체의 업무를 통할하며, 총회 및 이사회를 대표가 된다.
2. 의결권이 있는 운영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단체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의결하며 이사회 또는 대표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 고문: 대표와 사무총장과 단체의 운영팀을 고문한다.
 - 사무총장: 대표와 협의하여 단체의 운영에 필요한 실무적인 결정들을 하며 사무국(사무국장, 서기)에게 업무를 부과한다.
 - 운영이사(고문, 사무총장을 제외한 운영이사): 단체를 주요한 의사결정을 하며 총회에서 통과된 사업계획들을 수행한다.
3. 의결권이 없는 역할이사는 이사회의 결정 사항 및 다음과 같은 역할을 수행한다.
 - 자문이사: 단체의 운영에 필요한 분야별 자문을 수행한다.
 - 기획이사: 단체가 나아갈 방향과 행사들을 기획한다.
 - 사업이사: 해당년도 사업계획서대로 진행이 될 수 있도록 한다.
 - 실행이사: 단체의 필요한 업무나 행사들이 잘 실행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
 - 미디어이사: 온.오프라인 미디어를 잘 활용하여 단체의 활동을 지원한다.
 - 건축이사: 해외학교 건축에 필요한 업무를 수행한다.
 - 홍보이사: 대외적인 홍보 활동을 수행한다.
 - 콘텐츠이사: 해외학교 운영에 필요한 노하우와 콘텐츠를 연구하여 보급한다.
 - 해외발굴이사: 해외에 학교가 필요한 곳을 발굴하며 홍보한다.
 - 문화이사: 문화, 공연관련 업무를 수행한다.
 - 중보이사: 진행하는 일들이 원만하게 진행되도록 조율하고 격려한다.
4. 감사는 단체의 사업계획 및 예산.결산을 1년에 1회이상 감사를 시행하며 감사의 자격은 운영이사나 역할이사를 해본 사람으로 선정 한다.

제4장 총 회

제15조(총회의 구성) 총회는 단체의 최고 의결기관이며 회원으로 구성한다.

제16조(총회의 구분과 소집)

1.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하며, 대표가 이를 소집한다.

2. 정기총회는 매 회계연도(01.01~12.31) 기준 당해연도 12월 01일에서 차후년도 01월 31일까지 소집하며, 임시총회는 대표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3. 총회의 소집은 대표가 회의안건·일시·장소 등을 명기하여 회의 개시 7일전까지 단체의 인터넷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고하며 회원에게는 5일전까지 무선, 문자, SNS 등으로 회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1) 페이스북 드림스드림 페이지 게재: <https://www.facebook.com/dreamsdream100>
 - 페이스북 드림스드림 모임방 게재: <https://www.facebook.com/groups/dreamsd/>
 - 2) 카톡 드림스드림 단톡방에 게재후 화면캡처 후 보관
 - 3) 문자발송시 발송 내역 화면캡처 후 보관
 - 4) 메일 발송시 메일 내용 보관

제17조(총회소집의 특례) 대표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소집요구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1. 재적이사 과반수가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2. 재적회원 3분의 1이상이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3. 감사가 감사결과와 관련하여 요구할 수도 있음.

제18조(총회의 의결사항) 총회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임원의 선출 및 해임에 관한 사항
2. 단체의 해산 및 정관변경에 관한 사항
3. 예산 및 결산의 승인
4. 사업계획의 승인
5. 기타 중요사항

제19조(총회의 의결방법)

1. 총회는 정관에서 따로 정하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재적회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2. 부득이한 사정으로 참석을 못할 경우 회원은 서면으로 의결권 및 출석을 갈음 할 수 있다.
3. 서면으로 의결권을 행사한 때에는 참석불가사유와 안건내용에 의사표시를 하여 총회 전일까지 단체에 총회 개최 1시간 전까지 도착되도록 [인편, 우편, fax, 메일, 카톡(화면캡처후 보관), 등] 제출하여야 한다.

제20조(의결제척사유) 회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1. 임원의 선출 및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을 의결할 때
2. 금전 및 재산의 수수 또는 소송 등에 관련되는 사항으로서 자신과 단체의 이해가 상반될 때

제21조(회의록작성 및 관리)

1. 단체는 총회, 이사회 회의록을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2. 회의록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 대표 및 출석한 이사, 감사가 기명 날인하여 단체사무실에 비치하거나 단체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회원들이 열람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①회의의 일시 및 장소 ②출석자 수 ③회의안건 ④의결사항 + 서명부(출석회원)

제5장 이사회

제22조(이사회 구성) 이사회는 운영이사(대표, 고문, 사무총장 포함하여 7인이상), 감사로 구성한다.

제23조(이사회 소집)

1. 이사회는 정기이사회와 임시이사회로 구분한다.
2. 정기이사회는 년1회 개최하고 임시이사회는 의결권이 있는 이사의 2분의 1이상의 요청이 있거나 대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소집한다.
3. 대표는 이사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개최 7일전까지 임원에게 회의의 목적과 안건, 개최일시 및 장소를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다고 인정되는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24조(이사회의 의결사항) 이사회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업무집행에 관한 사항
2. 사업계획의 운영에 관한 사항
3. 예산·결산서의 작성에 관한 사항
4. 정관변경에 관한 사항
5. 총회에 부의할 안건의 작성
6.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7. 정관의 규정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8. 기타 단체의 운영상 중요하다고 대표가 부의하는 사항

제25조(의결정족수)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6조 (서면결의 허용)

1. 대표은 이사회에 부의할 사항 중 경미한 사항 또는 긴급을 요하는 사항에 관하여 이를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이 경우에 대표는 그 결과를 차기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모든 안건을 서면결의 허용하지는 않으며 특히 정관변경이 있을 때에는 허용되지 않는다.
2. 제1항의 서면결의 사항에 대하여 재적이사 과반수가 이사회에 부칠 것을 요구하는 때에는 대표는 이에 따라야 한다.

제27조(회의특작성 및 관리)

1. 단체는 총회, 이사회의 회의록을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2. 회의록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 대표 및 출석한 이사, 감사가 기명 날인하여 단체사무실에 비치하거나 단체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회원들이 열람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①회의의 일시 및 장소 ②출석자 수 ③회의안건 ④의결사항 + 서명부(출석회원)

제6장 사업진행

제28조(사업진행기간)

사업진행기간은 구성된 날부터 해산시 잔여재산을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유사한 목적을 가진 비영리 단체에 귀속한 후 해산하는 시점까지로 한다.

제29조(사업포괄승계)

총회전 단체에서 기 추진되었던 모든사업 및 업무와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한다.

제7장 재산과 회계

제30(자원)

1. 단체의 유지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자원은 다음과 같다.
① 회비(정기후원 약정금액으로 대체한다.)
②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③ 각종 기부금
④ 기본재산으로부터 생기는 과실금
⑤ 기타
2.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드림스드림 인터넷 홈페이지와 국세청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매년 3월 31일까지 공개한다.

제31조(회계년도) 단체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제32조(예산편성 및 결산)

1. 단체는 회계연도 1월전에 사업계획 및 예산안에 대하여 이사회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는다.
2. 단체는 사업실적 및 결산내용을 당해 회계연도 종료 후 2월 이내에 이사회 의결을 얻어 총회에서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33조(회계감사) 감사는 단체의 업무 및 재산상태와 회계에 관하여 감사하며, 정기총회시 감사결과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감사는 최소 연 1회로 한다.

제34조(임원의 보수) 임원에 대하여는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업무수행에 필요한 실비에 대한 지급은 회의를 거쳐서 결정 한다.

제7장 사무부서

제35조(사무국) 대표의 지시를 받아 단체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둔다.

1. 사무국에 사무총장과 사무국장 및 필요한 직원을 둘 수 있다.
2. 사무국장은 이사회 의결을 거쳐 대표가 임명한다.
3. 사무국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 의결을 거쳐 별도로 정한다.

제8장 기부금 인터넷 공개 및 해산시 규약

제36조(사무국)

1.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드림스드림 인터넷 홈페이지와 국세청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매년 3월 31일까지 공개한다.
2. 해산시 잔여재산을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유사한 목적을 가진 비영리 단체에 귀속하도록 한다.

제9장 보 칙

제37조(단체해산)

1. 단체를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회원 4분의3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주무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2. 해산시 잔여재산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유사한 목적을 가진 비영리 단체에 귀속하도록 한다.

제38조(다른규정의 적용)

1. 이 정관에서 정하는 사항 외에 단체의 운영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관계법령 및 관련 행정기관의 지침, 지시 또는 유권해석 등에 따른다.
2. 이 정관에서 정한 사항이 법령 등의 개정으로 인하여 관계법령에 위배될 경우에는 관계법령에 따른다.

제39조(정관의 해석) 이 정관의 해석에 대하여 이견이 있을 경우 1차적으로 이사회에서 해석하고 그래도 이견이 있는 경우 총회에서 해석한다.

제40조(소송관할) 단체와 회원간의 법률상 다툼이 있는 경우 소송관할은 단체소재지 관할법원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2016년도 정기총회 이후부터 시행한다.

제2조(설립당시의 임원선임에 대한 경과조치) 이 단체 설립당시 발기인 총회에서 선임된 임원은 이 정관에 의하여 선임된 것으로 본다.

제3조(설립자의 기명날인) 이 단체를 설립하기 위하여 이 정관을 작성하고 다음과 같이 설립자 전원이 기명날인 한다.

제4조(사업포괄승계)

총회 전 단체에서 기 추진되었던 모든 사업 및 업무와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 한다.

제5조(사업진행기간)

사업진행기간은 구성된 날부터 해산시 잔여재산을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유사한 목적을 가진 비영리 단체에 귀속한 후 해산하는 시점까지로 한다.

1차 정관 개정일: 2016.12.15.